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수 신 : 목포시장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검사기간 : 2017년 4월 5일 ~ 4월 24일 (20일간)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최 석 호 (목포시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 신 창 렬 (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정 종 준 (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송 근 찬 (세무사)

· 검 사 위 원 : 박 병 규 (세무사)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목 포 시 결 산 검 사 위 원

목 차

Ⅰ. 결산 검사 의견서 ---------- 7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 11

1. 목포시 자치단체 재정의 개황 ---------- 12

2. 세입·세출 결산 ---------- 14

3. 재무제표의 결산 ---------- 25

4. 성과보고서 ---------- 27

5.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29

Ⅲ. 개선 및 권고사항 ---------- 33

Ⅳ. 수범사항 ---------- 53

Ⅰ. 결 산 검 사 의 견 서

Ⅰ. 결산검사의견서

목포시장　귀하

2017년 4월 24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목포시 의회로부터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17년 4월 5일부터 2017년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6회계연도 목포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목포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목포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목 포 시　결 산 검 사 위 원

대표위원　최 석 호

위　원　신 창 렬

위　원　정 종 준

위　원　송 근 찬

위　원　박 병 규

Ⅱ. 결 산 검 사 총 괄 현 황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목포시 자치단체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회계	세입	556,623,628	580,015,020	565,587,745	596,140,461	646,678,596
	세출	481,399,886	519,701,842	493,762,331	529,868,856	563,508,813
	결산상잉여금	75,223,742	60,313,178	71,825,414	66,271,605	83,169,783
특별회계	세입	123,315,693	131,671,642	119,662,236	126,692,338	167,554,572
	세출	87,858,451	96,835,718	94,939,251	87,255,055	117,743,313
	결산상잉여금	35,457,242	34,835,924	24,722,985	39,437,283	49,811,259
기 금	수입	33,064,530	26,280,396	30,716,655	35,772,244	35,585,840
	지출	13,436,005	3,585,810	5,965,181	8,449,327	9,863,661
	결산상잉여금	19,628,525	22,694,586	24,751,474	27,322,917	25,722,179
총 계	세입(수입)	713,003,851	737,967,058	715,966,636	758,605,043	849,819,008
	세출(지출)	582,694,342	620,123,370	594,666,763	625,573,238	691,115,787
	결산상잉여금	130,309,509	117,843,688	121,299,873	133,031,805	158,703,221

2016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증가하게 된 것은 세수증가로 세입이 크게 증가하게 된데 기인하며 현연도는 상승한 추세이다.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연도 2,370천원이다.

목포시 자치단체의 현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 즉,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 등 회계 간의 내부거래와 공채발행, 차입, 채무상환, 전년도 이월금 및 다음해 이월금을 차감한 순계개념의 세입과 세출의 차를 의미한다.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6년	4,147,029,967	225,752,183	3,921,277,784	651,840,923	600,359,662	(51,481,261)	
2015년	4,115,238,544	257,078,682	3,858,159,863	567,494,321	532,494,921	(34,999,400)	
증감	31,791,423	(31,326,499)	63,117,921	84,346,602	67,864,741	(16,481,861)	

2016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63,117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63%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6,481백만원(47%) 증가하였다.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 (C=A-B)
합 계	791,792,672	814,233,168	681,252,127	132,981,041
일 반 회 계	632,546,637	646,678,596	563,508,813	83,169,783
특 별 회 계	159,246,035	167,554,572	117,743,314	49,811,258
공기업특별회계	134,114,463	141,953,477	94,338,300	47,615,177
기타 특별회계	25,131,572	25,601,095	23,405,014	2,196,081

회 계 별	이월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25,534,698 (66,915)	6,689,124	49,756,234 (260,480)	4,057,715	46,943,270
일 반 회 계	22,906,848 (66,915)	5,361,023	21,806,059 (260,480)	3,997,373	29,098,480
특 별 회 계	2,627,850	1,328,101	27,950,175	60,342	17,844,790
공기업특별회계	2,442,475	1,166,607	27,950,175	-	16,055,920
기타 특별회계	185,375	161,494	-	60,342	1,788,870

※ ( )는 자금 없는 이월임

○ 2016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세입예산현액 791,792,672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14,233,168천원(103%)이고,
- 세출예산현액 791,792,672천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은 681,252,127천원 (86%)이며,
- 세입·세출 결산차감액인 차인잔액은 132,981,041천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4,057,715천원과 이월비(명시·사고·계속비) 81,980,056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6,943,270천원이다.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632,546,637	660,078,047	646,678,596	2,116,429	11,283,023
결산확인액	632,546,637	660,078,047	646,678,596	2,116,429	11,283,023
차 액	-	-	-	-	-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646,678,596	646,678,596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징수결정 대비 불납결손액
2016	589,451,767	660,078,047	646,678,596	2,116,429	112.0%	98.0%	0.3%
2015	547,036,689	610,229,310	596,140,461	2,857,344	111.6%	97.7%	0.5%
증감	42,415,078	49,848,737	50,538,135	(740,915)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감소)한 주된 이유는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596,140,461천원 보다 50,538,135천원이 많은 646,678,596천원이 수납되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2,857,344천원 보다 740,915천원이 감소한 2,116,429천원이다.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632,546,637	660,078,047	646,678,596	2,116,429	11,283,022
지 방 세	96,483,000	117,533,124	106,815,175	1,909,579	8,808,370
세외수입	19,779,333	23,547,743	20,866,241	206,850	2,474,652
지방교부세	162,188,000	162,449,994	162,449,994	-	-
조정교부금 등	17,350,317	19,643,735	19,643,735	-	-
보 조 금	267,955,801	270,006,891	270,006,891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8,790,186	66,896,560	66,896,560	-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16.5%인 106,815,175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2%인 20,866,241천원, 지방교부세는 25.1%인 162,449,994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3.0%인 19,643,735천원, 보조금 등은 41.8%인 270,006,891천원이 수납되었다.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결 산 액	589,451,767	632,546,637	563,508,813	50,401,324	18,636,500
결산확인액	589,451,767	632,546,637	563,508,813	50,401,324	18,636,500
차 액	-	-	-	-	-

○ 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 예산액 589,451,767천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43,094,870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32,546,637천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563,508,813천원(예산현액대비 89.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0,401,324천원(예산현액대비 8.0%)이고, 집행잔액은 18,636,500천원(예산현액대비 2.9%)이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563,508,813	563,508,813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5지출액	2016 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계	529,868,856	632,546,637	563,508,813	89.1%	33,639,957	6.3%
일반공공행정	19,232,791	22,691,536	21,212,504	93.5%	1,979,713	10.3%
공공질서 및 안전	1,608,763	4,103,992	3,014,173	73.4%	1,405,410	87.4%
교육	12,832,520	13,389,630	12,887,291	96.2%	54,771	0.4%
문화 및 관광	28,361,417	40,040,736	29,421,728	73.5%	1,060,311	3.7%
환경보호	44,929,175	45,352,537	41,338,506	91.1%	(3,590,669)	(8.0%)
사회복지	245,167,940	258,172,441	247,245,926	95.8%	2,077,986	0.8%
보건	10,491,019	11,159,882	10,718,625	96.0%	227,606	2.2%
농림해양수산	13,135,703	23,024,609	15,554,865	67.6%	2,419,162	18.4%
산업중소기업	8,310,993	11,875,767	10,184,825	85.8%	1,873,832	22.5%
수송및교통	34,802,668	47,264,670	42,220,274	89.3%	7,417,606	21.3%
국토 및 지역개발	26,246,918	65,618,504	42,544,181	64.8%	16,297,263	62.1%
예비비	-	2,075,628	-	-	-	-
기타	84,748,949	87,776,705	87,165,915	99.3%	2,416,966	2.9%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247,245,92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42,544,181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기능은 16,297,263천원이 증가한 국토 및 지역개발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87.4%가 증가한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3,014,173천원을 지출하였다

(3) 특별회계(직영 공기업포함)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
합 계	159,246,035	193,888,937	167,554,572	474,006	25,860,359
공기업특별회계	134,114,463	152,585,244	141,953,477	-	10,631,767
상수도사업	26,535,998	30,989,653	27,404,443	-	3,585,210
하수도사업	87,031,903	96,297,308	89,250,751	-	7,046,557
공영개발사업	20,546,562	25,298,283	25,298,283	-	-
기타특별회계	25,131,572	41,303,693	25,601,095	474,006	15,228,592
주택사업	773,020	1,439,060	824,544	-	614,516
교통사업	20,024,930	35,495,591	20,407,509	474,006	14,614,076
의료급여기금	3,997,496	4,032,676	4,032,676	-	-
기반시설	336,126	336,366	336,366	-	-
결산확인액	159,246,035	193,888,937	167,554,572	474,006	25,860,359
차 액	-	-	-	-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되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67,554,572	167,554,572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134,548,801	159,246,036	117,743,313	31,906,127	9,596,596
공기업특별회계	111,444,533	134,114,464	94,338,300	31,559,258	8,216,906
상수도사업	25,900,999	26,535,999	22,603,500	-	3,932,499
하수도사업	65,343,534	87,031,903	52,294,800	31,537,678	3,199,425
공영개발사업	20,200,000	20,546562	19,440,000	21,580	1,084,982
기타특별회계	23,104,268	25,131,572	23,405,013	346,869	1,379,690
주택사업	773,020	773,020	30,053	-	742,967
교통사업	17,997,626	20,024,930	19,445,942	346,869	232,119
의료급여기금	3,997,496	3,997,496	3,929,018	-	68,478
기반시설	336,126	336,126	-	-	336,126
결산확인액	134,548,801	159,246,036	117,743,313	31,906,127	9,596,596
차액	-	-	-	-	-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17,743,313	117,743,313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이월,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계속비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 결산

(단위: 천원)

구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합 계	22,066,538	5,361,023	22,973,762	
기업유치활동지원		912,000		
방범용CC-TV설치		40,000		
사회복지관관리			53,929	
보훈회관건립추진	491,714			
노인회관/노인복지관 건립	1,300,000			
노인복지관 확충	5,280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19,800		
노인복지증진사업(보조)		6,476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16,500		
경로당 시설 확충		244,928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62,28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20,00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30,07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확충			17,802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119,036	39,233	
관광활성화지원		49,000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		41,500		
고하도유원지 조성	3,868,564			
해상케이블카 설치		1,400,000		

구 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13,750	
조선업 밀집지역 직접일자리사업(공공근로형)		2,386,015		
지역 향토명품 육성 2단계 사업		38,302		
국제교류활성화		10,000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		60,000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		79,500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101,637	
제2차 연안정비사업	409,275			
외달도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		283,259	288,527	
달리도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 사업		786,356	156,392	
도서기반확충사업		767,171		
어촌소득 기반시설 확충사업		307,159	18,672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280,756			
요트마리나 시설 운영			23,500	
전통시장 이벤트지원		66,000		
자연 환경 보전 지원		610,000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1,000,000			
목포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319,18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300,000		
목포역주변 버스승강장등 경관개선			159,598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		54,842	277,206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19,502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			18,826	
공공청사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30,000		

구 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대박마을 진입로 개설		497,279		
행남사~삼진물산간 도로개설		600,000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19,000		
지역역량강화사업		130,000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693,539	
세월호 선체 거치 지원		100,000		
도로관련 시설보강		105,386	38,914	
기타 시설물 구축		1,239,982		
목포의료원~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2,210		
마리아고교~구)동목포역간 도로개설		10,000		
석현동 광야교회 옆 도로개설		240,845		
흙산흑염소~신안주택간 도로개설		179,399		
용해동 골든빌라 주변 도로개설		1,318		
행남사입구~동문교회간 도로개설		100,000		
유달가구백화점옆 도로개설		162,884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개설		158,658		
가톨릭성지 주변 도로개설		23,145		
버스재정지원금		196,659		
공원 시설물 재정비		40,000		
고하도 목화 육지면 발상지 관광자원화 사업		1,143,000		
가로수 조성 및 관리		200,000		
지자체도시숲조성			373,428	
등산로 정비사업	1,470,126	73,111		
산림휴향 녹색공간 조성			193,180	

구 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53,602		
교육환경개선		307,718		
공공(시립)도서관 시설 및 장비보강		288,950		
작은도서관운영			44,635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		11,000		
국가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총액)		725,912	193,801	
문화재(유,무형)관리		350,000	9,010	
고 김대중대통령 유년시절 집터 복원		23,583		
목포 근대역사 건축문화자산 보존 융사업		900,000		
목포 야구장 건립공사		928,697		
체육시설 기능 보강		284,591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운영			4,237	
지역행복생활선도사업			25,845	
삼학도복원화사업	1,890,286			
도심관통 도로개설(근대역사테마길조성)		458,260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			41,224	
주거지 재생사업(만호지구)		361,602	12,716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1,091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5,918,190		214,500	
주거환경개선사업		50,000		
원도심 중심상가 공용주차장 건립		1,000,000		
서산,온금지구재개발	5,432,347			
가톨릭성지 활용 관광자원화시설 조성		780,000	1,878,162	
환경에너지센터운영		1,715,756		

검사결과 계속비는 32건 22,066,538천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명시이월비의 경우는 검사결과 5,361,023천원임이 확인되었다.

3. 재무제표의 결산

2016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6	2015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4,147,030	4,115,239	31,791	0.77
Ⅰ. 유 동 자 산	309,268	313,475	(4,207)	(1.34)
Ⅱ. 투 자 자 산	13,130	13,164	(34)	(0.26)
Ⅲ. 일반유형자산	127,622	122,303	5,319	4.35
Ⅳ. 주민편의시설	879,808	865,472	14,336	1.66
Ⅴ. 사회기반시설	2,813,459	2,796,033	17,426	0.62
Ⅵ. 기타비유동자산	3,743	4,792	(1,049)	(21.89)
부 채	225,752	257,079	(31,327)	(12.19)
Ⅰ. 유 동 부 채	39,890	45,464	(5,574)	(12.26)
Ⅱ. 장기차입부채	35,003	55,661	(20,658)	(37.11)
Ⅲ. 기타비유동부채	150,859	155,954	(5,095)	(3.27)
순 자 산	3,921,278	3,858,160	63,118	1.64
Ⅰ. 고정순자산	3,632,598	3,566,806	65,792	1.84
Ⅱ. 특정순자산	26,017	27,664	(1,647)	(5.95)
Ⅲ. 일반순자산	262,663	263,690	(1,027)	(0.39)

2016회계연도 말 목포시 자치단체의 자산은 4조 1,470억원으로 전년도의 4조 1,152억원보다 318억 원(0.77%) 증가하였는데, 주민편의시설 143억원(1.66%)과 사회기반시설이 174억원(0.62%)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2016회계연도 말 목포시 자치단체의 부채는 2,257억원으로 전년도의 2,570억원보다 313억원(12.19%)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채 상환 등으로 인해 유동부채가 55억원(12.26%), 장기차입부채 206억원(37.11%) 및 기타비유동부채 50억원(3.27%)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6	2015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 - 나)	159,477	149,829	9,648	6.44
가. 사업총원가	460,341	406,479	53,862	13.25
나. 사 업 수 익	300,864	256,650	44,214	17.23
Ⅱ. 관리운영비	113,697	102,588	11,109	10.83
Ⅲ. 비배분비용	26,322	23,428	2,894	12.35
Ⅳ. 비배분수익	12,105	11,077	1,028	9.28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287,391	264,768	22,623	8.54
Ⅵ. 일 반 수 익	338,872	299,767	39,105	13.05
Ⅶ. 재정운영결과 (Ⅴ - Ⅵ)	(51,481)	(34,999)	(16,482)	47.09

목포시 자치단체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4,603억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008억원을 차감한 1,595억원이다.

또한, 2016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028억원과 기타관리운영비 10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73억원, 기타비용 19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102억원, 기타수익 18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회계연도 목포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는 -514억원으로 전년도의 -349억원보다 165억원(47.09%) 증가하였습니다.

4. 성과보고서

목포시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목포시 자치단체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목포 건설'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에'비전-전략목표(11개)-정책사업목표(76개)-단위사업(22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6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2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B/A)
합 계	11	76	221	114	53	51.6
감 사 실	1	1	4	1	0	25.0
산업단지정책실	1	1	1	0	1	0.0
기 획 관 리 국	1	8	38	34	3	89.5
자치행정복지국	1	16	39	16	19	41.0
관광경제수산국	1	16	36	16	10	44.4
안전도시건설국	1	10	32	12	8	37.5
보 건 소	1	5	16	14	2	87.5
교육문화사업단	1	11	33	15	3	45.5
상하수도사업단	0	1	1	0	1	0.0
도시개발사업단	1	3	6	3	2	50.0
사 업 소	1	3	11	2	1	18.2
의 회 사 무 국	1	1	4	1	3	25.0

목포시 자치단체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기획관리국은 89.5%를 달성한 반면, 도시개발사업단은 50.0%, 교육문화사업단은 45.5%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5.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채권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7,126,082	25,045	52,041	7,099,085
일반회계		6,284,906	-	6,295	6,278,611
특별회계		639,074	25,045	45,746	618,373
	주택사업	628,563	25,045	44,946	608,662
	의료급여기금	10,511	-	800	9,711
기금		202,101	-	-	202,101
	자활기금	202,101		-	202,101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099,085천원으로 확인되었다.

(2) 채무

채무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68,710,700	-	18,570,000	-	50,140,700
일반회계	45,638,700	-	7,282,000	-	38,356,70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3,072,000	-	11,288,000	-	11,784,000

검사결과 채무는 전년대비 18,570,000천원이 감소한 50,140,700천원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채무의 상환 예정은 다음과 같다.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천원)

구 분	채무액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차입금	50,140,700	15,138,000	11,210,000	7,282,000	6,022,000	10,488,700	

(3) 기금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금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당해연도말 현 재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기타		
합 계	2,138,230	163,000	27,322,917	1,616,065	4,345,626	9,863,661	25,722,177
통합관리기금	-	-	16,661,070	-	678,919	1,943,927	15,396,062
자 활 기 금	-	-	380,376	616,065	210,928	948,892	258,477
성 평 등 기 금	100,000	-	123,024	-	32,931	122,000	133,955
중소기업발전기금	-	-	498,232	-	130,197	310,614	317,815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	-	182,060	-	137,420	172,496	146,984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	-	3,706,955	-	2,915,085	3,646,387	2,975,653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349,461	-	384,605	-	6,586	124,434	616,218
재난관리기금	848,769	154,000	4,686,552	-	66,322	686,847	5,068,796
식품진흥기금	-	9,000	254,975	-	57,380	18,169	303,186
문화예술진흥기금	-	-	431,271	-	64,425	50,000	445,696
체육진흥기금	-	-	13,698	-	8,139	-	21,837
지방채상환기금	840,000	-	99	1,000,000	37,294	1,839,895	37,498

검사결과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25,722,177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1,600,740천원이 감소한 것이다. 본년도에 기금의 지출액은 98,63,661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다.

(4)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3,364,563,434	122,256,896	61,496,852	3,425,323,478
행정재산	공공용재산	2,871,588,407	108,784,312	75,000	2,980,297,719
	공용재산	114,962,092	-	-	114,962,092
	기업용재산	353,822,544	-	49,682,440	304,140,104
	보존재산	3,349,284	48,798	-	3,398,082
	소계	3,343,722,327	108,833,110	49,757,440	3,402,797,997
일반재산		20,841,107	13,423,786	11,739,412	22,525,481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60,760,044천원이 증가한 3,425,323,478천원이다. 주요 증가 내역은 도로개설 등 부지매입, 경로당 건립, 소공원 등이며 감소내용은 일반재산 매각 등 이다.

(5)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805	66	5	866
금 액	6,957,933	744,086	250,712	7,451,307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 보다 493,374천원이 증가한 7,451,307천원이 확인되었다. 증가사유는 쓰레기수거용차량 및 일반승용차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된 것이다.

Ⅲ. 개선 및 권고사항

1. 공간정보시스템(GIS) 도로 및 지하매설물 DB갱신 철저

□ 현황

○ 2016년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갱신 현황 : 18건

○ 근거 :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제13조

제3조 (지리정보의 활용 등) ①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국토관리·도시계획·지적관리·자원개발·연안관리·해양개발·환경보전·농림·건설관리·수자원관리·교통체계·물류·시설물관리·재난재해예방 등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도로법」제38조에 따른 통신·전기·가스 등의 주요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점용허가를 하거나 이러한 사업의 준공 전에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 문제점 :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신규설치, 이설공사 등 매설공사가 완료된 사업의 준공도면(전자도면) 제출 누락 등으로 이를 이용한 지하시설물 DB갱신이 되고 있지 않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문제점 노출

□ 개선 및 권고사항

○ 공사부서에서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신규설치, 이설공사 추진시 지하시설물 DB갱신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시 적정한 예산확보 등을 하여 최신의 GIS자료가 갱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 공간정보시스템(GIS)의 총괄부서에서는 공사부서 및 유관기관에 원활한 자료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여 공간정보시스템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개선 권고함.

□ 해당 부서

민원봉사실,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2.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 환경시설 홍보 방안 강구

□ 현황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관리 현황-대양동 241-41 일원>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 처리용량 및 방식 : 음식물류 폐기물 40톤/일, 호기성 퇴비화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시설규모 : 건조 80톤/일, 부지면적 : 24,055㎡, 건축면적 : 2,152㎡

○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 시설규모 : 230톤/일, 고형연료(SRF) 115톤/일

○ 매립가스(LPG) 발전시설

- 시설규모 : 2MW (1MW× 2기), 포집시설 9개소

○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시민과 밀접한 시설이 설치되어 대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동중에 있음에도 홍보 부족 등으로 분리수거 등이 미흡하여 처리에 어려움과 시설관리 미비 등 운영상 문제점을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환경관련 시설 유지관리 효율성 증대차원의 예산확보는 꾸준히 필요할 것이며

○ 우리시 국책 및 지역현안 사업현장 특히 환경시설 등에 대한 방문기회가 적어 각 동 자생조직 등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한다면 시정에 대한 이해 증진과 분리배출 등으로 시설운영관리에 효율성 증대에 기대할 것이므로 적극 추진 요망함.

□ 해당 부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자원순환과

3.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처분 철저

□ 현황

<세입금(과태료 및 과징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2016. 12. 31.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세입목	다음연도 이 월 액	사유별		비고
			납세태만	기타	
농업산업과	과태료	26,237	26,237		
노인장애인과	과태료	25,401	25,401		
민원봉사실	과징금및이행강제금	43,510	43,510		
민원봉사실	과태료	1,276	1,276		
자원순환과	과태료	16,837	16,337	500	
해양수산과	변상금및위약금	204,029	204,029		
건축행정과	과징금및이행강제금	135,059	135,059		
건축행정과	과태료	4,125	4,125		
건설과	과태료	13,053	5,553	7,500	
보건위생과	과징금및이행강제금	1,000		1,000	
보건위생과	과태료	1,896	1,896		
교통행정과	과태료	428,995	428,995		
자동차등록사무소	과태료	550,721	550,721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대책에 있어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발생 즉시 독촉과 함께 납부독려, 재산압류, 공매, 대금지급정지 등을 병행 추진하고

○ 아울러, 시효소멸(결손처분)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기를 권고함.

□ 해당 부서

일자리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민원봉사실, 자원순환과, 해양항만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보건위생과

4. 몽탄정수장 생산량 증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현황

○ 몽탄정수장 시설현황은 1일 12만톤 정수능력임.
탐진댐 정수구입 계약으로 부득이 생산량이 1일 절반정도 가동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몽탄정수장 가동율이 현재 전체시설(12만톤) 대비 절반정도(5.6만톤)인 바, 탐진댐 정수구입 계약을 조금 줄여서라도 가동율을 높여 생산량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 몽탄정수장 시설투자, 개보수시 전체 용량인 12만톤의 절반정도인 현 정수 생산량을 감안한 물품과 시설비 등의 적절한 예산투입 하기를 강력히 권고함.

□ 해당 부서

수도과

5. 남해환경관리과 사택 운영방안

□ 현황

○ 위　치 : 목포시 삼학로 222-2 남해환경관리과내

○ 준공일 : 1998. 7월

○ 규　모 : 실평수 59.50㎡(18평)

○ 세대수 : 총 16가구

○ 입　주 : 12가구(4실 공실)

□ 개선 및 권고사항

○ 남해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사택이 노후화되고 관심 부족으로 공실이 발생중이며, 향후 예산확보와 수선유지를 통해 쾌적한 거주여건을 유지하시기 바라며

○ 공실에 대한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실을 최소화 하도록 강력히 권고함.

□ 해당 부서

남해환경관리과

6. 예비비 사용 부적절

□ 현황

○ 연도별 예비비 사용 내역

(단위 : 천원)

년도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 유	비고
계	204,242	148,927	55,315	구제역 발생 및 고병원성AI 발생으로 전염방지를 위한 필요 비용	
2016	68,457	46,410	22,047		
2015	40,931	33,703	7,228		
2014	94,854	68,814	26,040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임.

○ 농업산업과의 경우 구제역 및 고병원성AI 발생 전염방지를 위하여 2016년 예비비 46,410천원을 지출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는 매년 반복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으로 예측 가능한 사유인데도 예비비를 3년 연속 지출한 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권고함.

□ 해당 부서

농업산업과

7. 장사시설운영 세출예산 과다 불용처리

□ 현황

○ 장사시설운영 시설비·감리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과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지출원인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계	626,422	626,422	206,864	206,864	419,558	
시설비	554,648	554,648	206,864	206,864	347,784	
감리비	71,774	71,774	-	-	71,774	

○ 추모공원 건립비용중 시설비 및 감리비 626,422천원(시설비 554,648천원, 감리비 71,774천원)을 전년도 예산 이월하여

○ 당해연도 시설비 206,864천원만 지출하고, 집행잔액 347,784천원을 과다 불용처리하였으며

○ 감리비 71,774천원은 미집행 전액 불용처리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 세입으로 충당되는 바,

○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집행시기를 판단하여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추경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 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8. 보조금 집행 정산서 미흡

□ 현황

○ 보조금은 보조금관련 법 및 목포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목포시 체육회 산하 △△협회에서는

- 2016. 10. 27. 식당영수증 내용이 품목, 단가, 수량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 2016. 10. 31. △△협회비 내용이 누락되었으며
- △△용품 구입시 지출결의서에 품목을 누락하는 등

○ 지출결의서 내용이 미흡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금 집행정산서는 집행후 작성되므로 보조금 집행전에 관련 부서에서 회계관련 지도를 하는 등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타 협회도 지도하도록 권고함.

□ 해당 부서

교육체육과

9. 이월사업 예산결산 집행잔액 과다

□ 현황

○ 예산편성후 상반기가 경과하면 집행부서에서는 수입과 지출을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 과부족을 판단,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이월사업 등 집행잔액이 과다함.

○ 집행잔액내역

(단위 : 천원)

부서	과목	집행잔액	비고
일자리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82,000	(전년도이월)
해양항만과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전년도이월 600,000)

□ 개선 및 권고사항

○ 각 실과소 예산은 1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의 예측이므로 예산편성후 예산집행사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추경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권고함

□ 해당 부서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기획예산과

10. 지출 증빙서 작성 철저

□ 현황

○ 지출증빙서는 회계관련 법규에 따라 서식의 연월일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나,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 교부결정서 기재 사항 등이 다음과 같이 미흡하였음.

○ 검토내용

- 대불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서 일자 누락
- △△△△△보조금 : 교부결정서 일자 누락
- △△△△△복지관 보조금 교부결정서 일자 누락

□ 개선 및 권고사항

○ 각 사업부서에서는 계약 및 지출에 있어 지출증빙서 제출시 서류의 일자 등을 누락없이 기재토록 하고

○ 특히, 보조금교부결정서의 일자는 더욱 중요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함.

□ 해당 부서

일자리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농업산업과

11. 해양쓰레기 소각처리 서류작성 철저

□ 현황

○ 목포시 연산동 620-48번지 일원 해양쓰레기 용역 9,400천원을 수행함에 있어

- 사업자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의 신고일자가 미기재 되었고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역시 발행일자가 없으며
- 착수계, 용역예정공정표도 일자가 기록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미흡할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모든 공문서는 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공문서 또는 공문서 첨부문서들이 발행일자 없이는 미비된 서류이므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서류구비에 만전을 기하기를 권고함.

□ 해당 부서

해양항만과

12. 원도심 활성화 상가보조지원금 관리 철저

□ 현황

○ 목포시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2006.1.16.제정)에 따라 2016년에 집행된 원도심활성화 보조금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6회계연도 지원대상 : 78개소 270,093천원

○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는 원도심의 빈 사무실에 입주하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원도심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이나, 정산서 검토결과 '△△△△'(대표자 : ＊＊＊) 사업자의 경우 2015. 7. 15.에 개업하여 2015. 7. 22.에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홈택스 조회를 통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2017. 4월까지 6회(회당 225만원)에 걸쳐 총 13,500천원의 지원금이 부당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차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시에는 해당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폐업을 했는지 현장조사와 홈택스 조회를 통해 면밀히 확인하여 폐업한 사업자에게 지원금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함.

○ 아울러, '△△△△'사업자가 부당 수령한 보조금 상당액은 즉시 환수 조치하고, 기 집행된 보조금 내역도 점검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토록 권고함.

□ 해당 부서

도시재생과

13. 체납액 최소화 방안 강구

□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부도및경영란		소송계류		고질체납		무재산		행방불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도세	81,423	2,526	5,731	748	195	6	72,401	1,666	1,112	32	1,974	73
시세	127,919	8,807	11,586	2,069	287	73	107,600	6,142	2,600	205	5,846	317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질체납은 6,142백만원(전체의54%), 부도및 경영난은 2,069백만원(전체의 18%)으로 전체 체납사유의 72%를 차지함. 고질체납 사유중에서는 자동차세가 3,517백만원(고질체납의 57%), 재산세가 1,160백만원(고질체납의 18%)으로 전체 고질체납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 위 분석과 같이 경기불황형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가능하나, 인력확충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징수노력을 해왔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더욱이 이러한 장기체납은 자연스럽게 결손으로 이어져 세수의 누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납단계에서 적극적인 징세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이러한 체납자중세는 재산은닉 등 사해행위를 통해 납부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TF팀 등을 꾸려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징세 행정을 펴주길 바라며, 체납액 징수 실적에 따른 파격적인 포상을 통해 징세담당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됨.

□ 해당 부서

세정과

14. 성과목표관리제도 추진 철저

□ 현황

○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16회계연도부터 결산에도 반영되도록 되어 있음.

○ 2016회계연도에 처음 적용되는 제도임으로 지표산정 및 목표치 설정시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일부부서에서는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치 설정을 누락하여 미달성율이 53%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 성과계획서에 따라 성과보고서가 작성되고 결산에 반영되어 공표되는 자료인 만큼 성과계획서 작성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총괄부서에서는 각 실과에 개선요구를 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성실하게 작성하여 성과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해당 부서

기획예산과

15. 노무관리 철저

□ 현황

○ 목포시 노조현황

조합명	설립일자	조합원(인)	비고
목포시 공무직 노동조합	2014. 9. 12.	***	
한국노총	2001. 7. 1.	***	
민주연합	2011. 7. 25.	**	
공공운수노동조합	2013. 10. 17.	**	
통공노 목포시지부	2015. 7. 24.	****	

○ 노조법에 의거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기본법을 보장해 주는 근거가 되고 있으나 노사 양측의 의견 충돌 및 쟁의 행위 발생 시에는 중재 및 조정해 주는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이에 미치지 못함.

○ 목포시에서는 노사 양측의 이해 충돌로 행정적인 소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불신의 벽이 조장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노사문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으로 노무사 채용방안이 있으나, 도내 전시군의 채용사례가 없고 도단위에서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실적인 방안으로 목포시 자문 노무사를 자문에 그치지 않고 각종 현장에 투입하여 적극 중재, 조정할 수 있도록 선임 노무사 수준으로 상향 개선을 권고함.

□ 해당 부서

자치행정과

16. 특별조정교부금 용도 외 사용 부적정

□ 현 황

○「지방재정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제6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 받을 경우 교부 목적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그러나 목포시는 2015년도에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해진 특별조정교부금 67,000천원을 교부받으면서 16,973천원만 목적에 맞게 편성하고 나머지 50,027천원은 위 사업과 관련 없는 일반경상경비 등으로 사용함.

목포시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교부 연도	교 부 사 유	교부금액	관련 세출예산 편성액	용도 외 사용액	비 고
2015	소계	67,000	16,973	50,027	
	2014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조정교부금	25,000	16,973	8,027	
	2014 지방세정 종합평가 특별조정교부금	42,000	0	42,000	
2016	소계	63,500	0	0	2017년도 추경(예정)
	2016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조정교부금	10,000	0	0	
	2016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조정교부금	53,500	0	0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으로 용도가 정해진 특별조정교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 세무업무 추진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징수포상금과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필요한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 도입 등을 검토하기를 권고함.

□ 해당 부서

세정과

17. 2016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확대

□ 현 황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액 1,250천원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2016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 및 포상금 예상액

(단위 : 천원)

지급기준	징수금액	요율	포상액	비고
합 계			4,913천원	
1년차 체납액	224,821천원	100분의 1	2,248천원	
2년차 체납액	25,501천원	100분의 3	765천원	
3년차 체납액	38,003천원	100분의 5	1,900천원	

□ 개선 및 권고사항

○ 2016년도 경우 포상 대상 금액은 4,913천원이나 예산액 1,250천원만 지급하였음.

○ 세외수입 업무 추진 직원의 사기앙양 등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맞는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함.

□ 해당 부서

세정과

Ⅳ. 수 범 사 항

1. 「2016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우수시 선정

□ 현　　황

○ 전라남도 주관 2016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 우수시군(6개 시군) : 기관표창 및 2억원 차등 배분
  · 우　수(40백만원) : 목포시
- 우수상

□ 수범사례

○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의 대위소송을 통한 체납세 징수

- 관내 대형 상가건물의 미분양에 따른 사업시행법인의 부도로 인한 19억여원의 고액 체납세 발생
- 체납법인의 부도로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시공사의 권리행사 정황을 포착
- 체납법인과 시공사가 체결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던 중 특약사항에 제세공과금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 문구를 확인
- 2015. 10. 30. 소송수행의 자력이 없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토록 소 제기
- 2016. 4. 12. 소송 진행중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2014년 이후 체납세 411백만원 징수
- 현재 체납세 15억여원에 대한 대위소송 진행중

□ 해당부서 : 세정과